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급식기본법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「군급식기본법」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.

3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군급식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급식의 기본계획)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법 제5조에 따른 전군(全軍)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1. 군급식 운영방식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
2. 급식기준액 및 기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
3. 식재료의 원산지, 품질등급, 기타 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4.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군급식 대상) 법 제4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”이란 「군인사법」 제2조에 따른 현역병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, 그 외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이 영내 거주를 명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(군급식위원회) ①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군(全軍)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체

적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국방부 군수관리관
2. 위원 : 국방부 물자관리과장, 각 군 본부 급식정책 담당과장,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·조달청 급식 관련 담당과장, 그 외 급식정책 협의를 위해 필요한 인원

② 전군(全軍) 군급식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군급식 업무위탁 범위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식단작성 및 식재료 구매·운반
2. 식재료 검수·보관·세척 등 품질·위생관리
3. 조리·배식 및 식기관리
4. 급식기구 세척, 급식시설 청소·방역·방충 등 위생·안전관리
5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6조(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요건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및 제88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운영을 신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신고를 할 것
2.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·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: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의 신고

를 할 것

제7조(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) 법 제10조에 따른 군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제8조(권한의 위임)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열람·수거
3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
4.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조치결과의 접수
5.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

제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군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	100	300	500
나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	100	200	300
다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	100	200	3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물자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5723